



제 424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시가 반영 등〉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09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시가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산정	3
2.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19
3. 자산운용비율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22
4. 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에 대한 특례(부칙)	25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8인

나. 제 안 일 : 2025. 2. 17.

다. 회 부 일 : 2025. 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업권과는 달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법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IMF 사태 이후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

이 유가증권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투자신탁회사들이 파산에 이른 것을 계기로 모든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으나 보험회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그리고 채권 또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총자산과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에 대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할 때와 비교하여 자산운용비율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6조제4항 및 제10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시가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산정

- 개정안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u>

(1) 현행 제도 및 개정안 주요내용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운용자산을 건전하게 운용·보전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적기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재원을 충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음.

○ 「보험업법」 제104조¹⁾는 보험회사가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105조²⁾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투기 목적의 자금 대출, 정치자금의 대출 등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106조는 제105조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 외의 자산운용은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경영판단 하에 시행하도록 하면서, 보험자산의 편중 운용 및 부당한 거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시 준수해야 하는 방법과 그 비율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규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 제한,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 제한, 대주주 등 일정한 관련자와 특수한 자산거래 형태 제한, 특수한

1) 「보험업법」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2) 「보험업법」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2.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3.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5.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산에 대한 보유 비율 규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와 같은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규제는 당초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규정³⁾하고 있었으나, 2003년 「보험업법」 전부개정 당시 자산운용의 중요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법률에 상향하여 명시하게 되었음.
-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대상별 자산운용비율 규제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규제(일반계정 기준)

구분	투자대상별 자산운용	비율 한도
제1호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총자산의 3%
제2호	·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	총자산의 7%
제3호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총자산의 12%
제4호	· 동일한 개인·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총자산의 20%
제5호	·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 작은 금액
제6호	·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
제7호	·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기자본의 10%
제8호	· 부동산의 소유	총자산의 25%
제9호	·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	총자산의 50%

주: 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3)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1963. 5. 31. 개정을 통해 제7조의3(재산이용의 비율)이라는 형태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파악됨.

□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은 현행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은 총자산 및 자기자본의 시간적 기준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채권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등의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분모에 해당하는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은 장부상 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나, 자산운용비율 한도 내에서 분자에 해당되는 채권·주식 금액은 취득 당시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음.

○ 참고로,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주식·채권의 소유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별표)은 2000년 「보험감독규정」(금융감독원규정) 전면개정 당시에 신설되었음⁴⁾.

□ 개정안은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비율 적용 기준 중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 즉 시가에 따르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4) 동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회계기준 또는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제19대국회⁵⁾, 제20대국회⁶⁾ 및 제21대국회⁷⁾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제21대국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차례 논의⁸⁾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개정안과 같이 「보험업법」상 자산운용비율 규제를 적용할 때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 합계액을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개정안에 포함된 자산운용비율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또는 경과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아래에서는 각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2) 제도 변경의 필요성 관련 검토

□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산운용비율 규제 중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 합계액을 현행과 같이 취득원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도의 목적, 관련 제도, 유사 금융업권

5) 의안번호 1910100,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6) 의안번호 2000395,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4948,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4246,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7) 의안번호 2100592,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667,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8) 제21대국회 제400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2. 11. 22.)

의 사례 및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비율 규제 목적을 ‘특정자산에 대한 편중 투자로 인한 위험 전이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과 같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적용할 경우, 자산운용비율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식과 같이 가격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의 경우 그 보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상의 가액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주식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측면이 있음.
- 한편, 자산운용비율 규제 중 대주주 등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의 목적을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방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과 같이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 합계액을 ‘시가’로 적용할 경우, 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한도에 근접하여 투자 등 지원을 하였으나, 경영 악화 등으로 해당 계열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면 그 회사에 대한 지원 한도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관련 규제 측면에서 보면, 최근 보험회사의 부채와 자산을 모두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기준⁹⁾ 및 지급여력제도¹⁰⁾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건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자산운용비율 규제도 자산 가치를 ‘시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K-ICS 제도가 도입¹¹⁾되는 등 보험회사에 대한 회계기준이 시가로 평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자산운용비율 규제도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성¹²⁾이 있음.

○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K-ICS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 하락이 가용자본 감소로 이어진 사례가 나타난 바 있음.

- 2024년 9월말 기준¹³⁾ 전체 보험회사의 전분기(2024년 6월말) 대비 가용자본 감소액(△1.5조원)¹⁴⁾ 중 특정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가 하락¹⁵⁾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분석됨.

9) IFRS17은 2023년에 도입되었으며, 보험부채에 포함된 모든 위험을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기준을 의미함.

10) K-ICS는 2023년에 도입되었으며, IFRS17 도입에 맞춰 기존 지급여력제도인 RBC와 다르게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측정하는 제도임.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회사의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예정」, 2022. 12. 5.

12) 금융위원회도 제21대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22. 11. 22.)에서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4.9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2025. 1.14.

14) 가용자본은 이익잉여금 증가(5.7조원) 및 자본성증권 발행(3.4조원) 등으로 일부 증가하였으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1.2조원 감소하는 등 최종적으로 1.5조원이 감소함.

15)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화재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시장금리 하락과 삼성전자 주가 하락(2024년 6월말 대비 24.5%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8.0조원이 감소하였다는 입장임.

○ 다만,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기초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여 보험회사 보유 자산의 현재가치에 근거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자산운용비율 규제에 대해서도 ‘시가’로 적용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¹⁶⁾도 제시됨.

- 참고로,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¹⁷⁾, 보험회사가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험회사에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¹⁸⁾ 등 단계적 조치¹⁹⁾를 취할 수 있음.

□ 보험업권 및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 또는 소유와 관련한 규제를 보면, 취득 규제의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원가)을 기준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나, 소유(보유) 규제의 경우 보험업을 제외하면 장부가액(시가)를 기준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취득 규제의 경우 「보험업법」²⁰⁾, 「상호저축은행법」²¹⁾은 일정

16) 생명보험협회 의견임.

17)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8) 지급여력비율이 50%~100%: 경영개선권고, 0%~50%: 경영개선요구, 0% 미만: 경영개선명령

19)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 제7-19조 참조

20)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금액 이상의 대주주 등 발행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은행법」²²⁾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주주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하고 있음²³⁾.

- 이러한 취득 규제는 보험회사가 해당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취득원가로 적용되고 있음.

○ 다음으로, 소유 규제를 보면, 「보험업법」²⁴⁾,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③ 법 제11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법 제1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2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및 제22조의4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의4(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법 제12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 22) 「은행법」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8(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말한다.

- 23) 금융투자업의 경우 대주주(특수관계인 제외)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소유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 24)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 참조

법」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은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채권을 소유(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⁷⁾.

- 보험업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취득원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업 및 금융투자업의 경우 이러한 별도 적용 기준이 없어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시가)로 적용되고 있음.

25)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 행위)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그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③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27) 은행은 별도의 대주주 등의 발행 주식 등에 대한 소유·보유 규제가 없음. 다만, 은행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취득 규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1년 이내에 한도 초과 부분을 처분해야 함.

[표 2] 금융업권 대주주 등의 유가증권 취득·소유 관련 규제

구분	보험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취득기준 규제	Min[자기자본의 0.1%, 10억원] (채권·주식) ^{주1)}	자기자본의 1% (지분증권)	Min[자기자본의 0.1%, 10억원] (주식만 규제) ^{주1)}	소유 금지
평가기준	취득원가	취득원가	취득원가	-
관련법규 조문	시행령§57③	법§35의3①	시행령§9의4①	법§34①1.
운용기준 규제	Min[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 (채권·주식)	없음	동일계열기업 주식·채권 자기자본의 5%	특수관계인(대주주 제외) 주식·채권 자기자본의 8%
평가기준	취득원가	-	장부가액	장부가액
관련법규 조문	법§106①6.	-	감독규정§30①6.	시행령§37③

주1: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 결을 거치도록 함.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입법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며, 대주주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6% 이내에서 소유하도록 규제하되, 그 평가기준은 취득원가로 하고 있음.

○ 미국²⁸⁾은 동일인에 대한 자산운용규제(총자산의 2%)만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취득원가임.

28) 뉴욕주에 해당

[표 3] 보험업 자산운용규제 관련 해외사례

구분	일본	미국	EU
취득기준 규제	없음	없음	없음
평가기준	-	-	-
관련법규 조문	-	-	-
운용기준 규제	대주주 : 총자산 6% 동일인 : 총자산 10%	대주주 : 없음 동일인 : 총자산의 2%	없음
평가기준*	취득원가	취득원가	-
관련법규 조문	시행규칙§48의5	법§1405 및 §1414	-

자료: 금융위원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과 같이 자산운용비율 규제의 채권 또는 주식 소유 합계액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 특정 자산의 편중을 방지하고 관련 회계기준 및 지급여력제도가 시가로 평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며 업권별 소유 규제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시가’로 변경할 것인지,
- 아니면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현재가치에 따른 재무건전성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통해 확보하고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산운용비율 규제는 계열회사 등에 대한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한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통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자산운용비율 규제 기준을 ‘시가’로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러한 제도 변경이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제도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금융위원회도 개정안에 대해 여러 견해와 현실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하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된 의견 및 현실적 고려사항을 위주로 검토함.

(3)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검토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자산운용규제의 주식·채권 적용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할 경우 위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주요 보험회사는 2024년말 기준으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인 것으로 파악됨²⁹⁾.

○ 2024년 공시된 삼성생명의 사업보고서³⁰⁾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함)’ 주식의 수량은 약 5억 815만 7,000주, 장부가액(시가)은 27조 340억 수준이나, 해

29)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자산운용비율 부분은 제106조제1항제6호(대주주 등 주식·채권 소유 합계액 한도)임.

30) 2025. 3. 31. 상장공시시스템 공시 기준 / 이하 수치는 별도 표시 없으면 2024. 12. 31. 기준

당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취득가액) 기준으로 보면 약 5,442 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삼성생명의 총자산³¹⁾³²⁾은 약 249조 3,250억원 수준으로,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자산운용비율은 약 0.22%이나, 이를 시가 기준으로 산출하면 약 10.8%에 해당하여 총자산의 3%를 초과하게 됨.

- 개정안은 부칙³³⁾에서 법 시행 당시 제106조의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회사는 법 시행일부터 최대 7년 이내에 해당 비율에 맞춰 해당 주식을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최대 7년의 기간 동안 매각해야 함.

-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업이 계열사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게 될 경우 이해관계자와 자본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³⁴⁾이 제시됨.

- 먼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르면

31)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권과 특별계정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을 의미함.

32)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총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조(총자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제50조제1항의 특별계정 자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3) 부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 목차 이후에서 검토할 예정

34) 금융위원회 의견임.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규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산이 되어 이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이 저하되고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에 대한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이 시가로 변경될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 변동에 따라 자산운용비율의 준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이 대규모로 매각될 경우 주가 충격이 예상되어 소액주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 반면, 이해관계자 영향 측면에서 현행 ‘취득원가’ 기준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고,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개정안 부칙에 따라 최대 7년 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음.

○ 「보험업법」에서 별도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주식·채권 소유액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측면과, ‘시가’ 적용 시 특정 보

험회사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의견³⁵⁾이 있음.

-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최대 7년 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각되는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³⁶⁾됨.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는 법률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소각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728)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음.

35) 제21대국회 제400회(정기회) 정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2. 11. 22.)

36) 제21대국회 제400회(정기회) 정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2. 11. 22.)

2.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에 따라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회사가 법 시행 후 최대 7년(5년+2년)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실행 계획에 따라 이를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부칙

제2조(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회사는 제10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106조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채권 또는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매년 해소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자산가격, 총자산, 자기자본 등의 변동에 따라 실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행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된 실행계획을 다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경과조치 기간과 관련하여,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은 개정안 시행 당시 법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07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성 및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해당 보험회사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채권 또는 주식의 합계액의 20% 이상을 매년 해소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되, 자산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개정안 부칙의 경과조치는 개정안에서 채권 또는 주식 소유 합계액을 ‘시가’로 변경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초과로 보유하는 채권 또는 주식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의 입법을 전제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2003년 「보험업법」 전부개정 당시 현행 제106조의 자산운용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한 바 있음³⁷⁾.

37) 「보험업법 전부개정법률(제6891호, 2003. 5. 29.)」 부칙 제24조(신용공여 등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총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과조치 기간(최대 7년)이 주식 매각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의 충격 등을 완화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에 대해 논의하여 적절한 기간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자산운용비율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6조의2(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보험회사는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보험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108조제4항³⁸⁾은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제110조³⁹⁾는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와 자산운용

38)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특별계정의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보험업법」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한도의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제106조제4항에 다른 자산운용비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자산운용비율 적용 기준의 변경 여부에 따라 의결권 제한 여부를 함께 도입할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정안 부칙은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비율 초과 부분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개정안 부칙 제1조)⁴⁰⁾, 동 조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 대상 및 범위도 해당 실행계획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제3조)⁴¹⁾함.

□ 다만,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위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특정 기업의 실행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과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2는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실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1) 제3조(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의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대상 및 범위는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실행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그 제한 대상 및 범위를 실행계획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명
확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칙 시행일의 경우, 개정안 시행 당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보
험회사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행위
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 시행일을 예측하기 어려
움.
- 아울러, 개정안 시행 당시에는 개정된 자산운용비율 규제에 부합하
였으나, 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롭게 위 비율
을 위반하는 다른 사례가 나타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대상 및 범위가 불분명할 우
려⁴²⁾가 있음.

42) 개정안 부칙은 실행계획을 ‘법 시행 당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수립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이후 이를 초과하는 보험회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4. 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에 대한 특례(부칙)

- 개정안은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채권 또는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 차익을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단, 매각 최초 연도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

개정안 부칙
제4조(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에 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채권 또는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 차익을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의 실행계획에 따라 채권 또는 주식을 매각한 최초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차익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에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배당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배분하지 아니한다.

- 배당보험계약(이하 “유배당보험”이라 함)이란 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의미⁴³⁾함. 보험회사는 유배당보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유배당보험은 보험료수입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와

43) 「보험업법」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해당 보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배당보험 등과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한 것임.

○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에 유배당보험 손익과 무배당보험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유배당보험 이익의 계약자지분 중 일부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⁴⁴⁾.

- 무배당보험 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되, 유배당보험 이익은 90% 이상 계약자지분으로 하여야 하고⁴⁵⁾, 유배당보험 이익 중 계약자지분의 30% 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⁴⁶⁾할 수 있음.

○ 유배당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그 남은 손실을 우선 주주지분으로 보전하되, 5년 이내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음⁴⁷⁾.

44) 「보험업법 시행령」 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익과 무배당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배당보험계약 이익의 계약자지분 중 일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45)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 ① 보험회사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 10 이하를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약자지분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6)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의2(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①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이후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47) 「보험업법 시행령」 제64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④ 배당보험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우선 사용하여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보전한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 ② 영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 개정안은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채권 또는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 차익을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매각 차익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충실하게 배분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유배당보험은 대부분의 상품이 고금리 상품⁴⁸⁾으로 손실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 부칙에 따를 경우 해당 매
각 차익을 첫 해에만 유배당보험 손실을 보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매각 차익은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분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 부칙에 대해서는 주주와 계약자 간 또는 계약자 간 형평성 이
슈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
요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현재 생명보험사가 보유 중인 투자자산 중 장기투자자산의 경우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기여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측면⁴⁹⁾에서
해당 매각 차익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분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이라 한다)으로 보전(補填)하고도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그 남은 손실을 우선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후,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을 주주지분의 결손이나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주주지분의 결손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8) 보험연구원, IFRS 17 시행에 따른 계약자 배당제도 개선방안, 2023. 12. 20.

49) 생명보험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중 유배당보험의 비중은 1992년 100% 수준이었으나, 지속
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20.4% 수준임.

- 다만, 기존 유배당보험의 손실을 주주가 부담해온 상황에서 매각
차익의 대부분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분될 경우 주주의 합리
적 기대이익 및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⁵⁰⁾도 함께 감안하
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06

50) 생명보험협회 의견임.